



한국목회상담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자격심사 수련서류 작성 안내

유의사항

1. 본 작성요령은 각 급수별 자격규정 안내문이 아닌 수련서류작성 시 자주 문의주시는 부분과 작성 시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반드시 지원하시는 자격급수별 자격규정을 사전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서류 작성 이외의 서류제출요령은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2. 새롭게 변경된 목회/기독교 상담사 자격규정은 2027년 상반기 심사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보수교육, 필기시험, 서류제출 등을 기존/신규 중 하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모든 급수 신규 자격규정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기존/신규 규정 선택하여 심사 가능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신규 규정 심사만 가능합니다.

3. 자격 관련 문의 사항은 **협회이메일(kapca1982@naver.com)** 또는 **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월,수,목,금 10:00~16:00)

목차

01 기존 서류 작성 요령

(개인상담증명서, 개인/집단 슈퍼비전, 상담경력증명서, 개인수퍼비전 시행 및 수련수퍼비전)

02 신규 자격규정 변경 사항 안내

03 신규 추가 서류 작성 요령

(접수면접, 집단상담 참여, 심리검사 시행 및 슈퍼비전)

기존 서류 작성 요령

(개인상담증명서, 개인/집단 슈퍼비전, 상담경력증명서, 개인수퍼비전 시행 및 수련수퍼비전)

1. 개인상담증명서

- 1) 1대1 개인상담을 원칙으로 함.
- 2) 상담시간은 1시간으로 함.
- 3) 전문가, 감독의 성명과 직인 및 직접서명이 매 상담 시간마다 들어가야 함.
- 4)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5) 시간 및 장소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수정 부분에 해당 전문가, 감독의 서명을 받아야 함.

1-1. 개인상담증명서 서류 양식

개인상당 증명서

성명		상당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상당 일자	장소	편문자/감독 성명(서명)
예시	2020년 1월 3일 (1시간)	한국특회상당협회 센터	감독000 (직인), 조00 (서명)
예시	2020년 1월 10일 (1시간)	한국특회상당협회 센터	감독000 (직인), 조00 (서명)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10	(시간)		
11	(시간)		
12	(시간)		
13	(시간)		
14	(시간)		
15	(시간)		
16	(시간)		
17	(시간)		
18	(시간)		
19	(시간)		
20	(시간)		
21	(시간)		
22	(시간)		
23	(시간)		
24	(시간)		
25	(시간)		
총 00시간 가입			

원본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사본은 개인상당 감독자파 문건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원상담을 통하여 성장한 측면(본원작성):
자신이 앞으로 더 작업해야 할 부분(본원작성) :
전문가/감독 상담기의 의견: • 최종 상담가의 의견과 자필서명 및 날인이 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전문가 / 감독 : _____ (서명)

2.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 1)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2) 전문가에게 서명을 받을 시, 전문가를 수퍼비전 해준 감독의 서명이 ○표시된 부분에 함께 요구 됨.
- 3) 수퍼비전마다 작성해야 하며(개인수퍼비전 세부내역별로 작성), 각 전문가, 감독자별로 작성해야 함.
즉, 증명서의 상담한 사례내용과 지도감독받은 내용과 개인수퍼비전 세부내역과 동일해야 함.
- 4)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2인으로조를 구성할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를 수퍼비전에 반드시 포함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 각각 한 시간씩 자기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두 시간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함)
- 5) 각 전문가, 감독별로 작성하여야 함.
- 6) 1주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2-1.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이름	계도감독자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개인 수퍼비전을 받으신 전체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상당 장소	
상당한 사례 내용과 계도 감독받은 내용	
*각 사례별로 증명서 작성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독자 사인	

상당한 사례 내용과 계도 감독받은 내용

*각 사례별로 증명서 작성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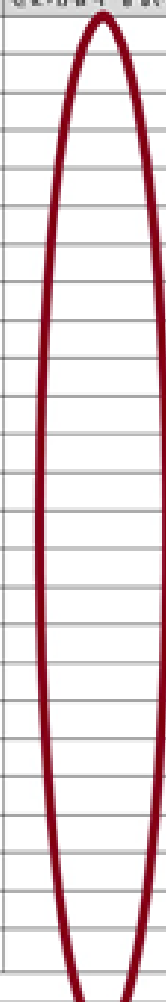
감독 : (서명)

계도감독자의 평가서

*각 감독별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 : (서명)

개인 슈퍼비전 세부 내역

성명	상당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상당 일자	장소	전문가/감독 설명(서명)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10	(시간)		
11	(시간)		
12	(시간)		
13	(시간)		
14	(시간)		
15	(시간)		
16	(시간)		
17	(시간)		
18	(시간)		
19	(시간)		
20	(시간)		
21	(시간)		
22	(시간)		
23	(시간)		
24	(시간)		
25	(시간)		

3. 집단 수퍼비전 증명서

- 1)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2) 최소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되, 감독 1인에게 15시간까지 인정한다.
- 3) 임상목회훈련 1 Unit은 집단수퍼비전 시간으로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4)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 참석은 회당 2시간을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사례참석확인증과 중복인정 가능)
- 5) 집단 수퍼비전은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6) 1주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집단수퍼비전 증명서 세부 내역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1	(직인)		
2	(직인)		
3	(직인)		
4	(직인)		
5	(직인)		
6	(직인)		
7	(직인)		
8	(직인)		
9	(직인)		
10	(직인)		
11	(직인)		
12	(직인)		
13	(직인)		
14	(직인)		
15	(직인)		
16	(직인)		
17	(직인)		
18	(직인)		
19	(직인)		
20	(직인)		
21	(직인)		
22	(직인)		
23	(직인)		
24	(직인)		
25	(직인)		

4. 상담경력증명서 (자유양식)

- 1) 상담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따라 양식이 상이함.
- 2) 상담경력증명서에 필수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은 총 상담시간과 면접상담 시간임.(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시간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길 권장)
- 3) 발급기관 명칭과 기관 직인은 필수로 기재요함.
- 4) 경력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제출 요함.

상담경력 증명서 (예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000센터 상담사로서 00년도 00월부터
00년도 00월까지 총00시간의 면접상담, 00시간의
집단상담을 하였으므로 상담경력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직인)

5. 개인수퍼비전 시행 증명서 (자유양식)

- 1)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따라 양식이 상이함.
- 2) 시행기관과 시행시간, 총시간 명시 필수.
- 3) 발급기관명과 직인 필수.

개인 슈퍼비전 시행 증명서(예시)	
성명: 생년월일:	
상기인은 본 기관의 슈퍼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수퍼비전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아래 -	
슈퍼비전 시행 기간	슈퍼비전 시행시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시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00시간
총 계	000시간
발급년월일	
기관명	
기관주소 및 대표자 명 (직인)	

6. 수련수퍼비전 증명서

- 1) ○표시된 부분은 성명과 직인 또는 직접서명이 함께 들어가야 함.
- 2) 전문가 자격취득 후 25시간 이상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함.
- 3)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됨.
- 4)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5)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명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하며,
1명에게는 반드시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6) 각 감독별로 작성하여야 함.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다른 상담자의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본 협회 감독에게 본인이 실시한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지도받는 수련을 말한다.

6-1. 수련수퍼비전 증명서 양식

수원슈퍼비전 증명서

이름		지도감독자	
날짜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상당 장소	수원 슈퍼비전을 받으신 전체 날짜를 기록하합니다.		
슈퍼비전 내용과 지도 감독받은 내용			
감독자 사인			

승격의견 내용과 지도 감독받은 내용	
감독 : _____	(서명)

계도감독자의 평가서	
• 각 감독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 _____ (서명)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1	(지점)		
2	(지점)		
3	(지점)		
4	(지점)		
5	(지점)		
6	(지점)		
7	(지점)		
8	(지점)		
9	(지점)		
10	(지점)		
11	(지점)		
12	(지점)		
13	(지점)		
14	(지점)		
15	(지점)		
16	(지점)		
17	(지점)		
18	(지점)		
19	(지점)		
20	(지점)		
21	(지점)		
22	(지점)		
23	(지점)		
24	(지점)		
25	(지점)		

신규 자격규정 변경 사항 안내

자격 규정 변경

1. 2024년 11월 16일에 자격 규정이 개정되어 자격 등급과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 자격증을 신규 개정에 따라 새로 발급 예정
3.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자격심사까지 지원자는 기존의 자격 규정과 새로운 자격 규정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등급은 변경된 자격등급이 부여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명칭 변경
 - 기독교/목회 상담사 감독 (동일)
 - 기독교/목회 상담사 1급 (기존 전문가)
 - 기독교/목회 상담사 2급 (기존 1급)
 - 기독교/목회 상담사 3급 (기존 2급)
2. 감독 특별 응시 및 자문회원
 - 해외 감독 자격 보유자
 - 언어 비매개 치료감독 자격 보유자
 - 감독 2인 또는 회장단의 추천
 - 특별자문회원 : 전문성과 협회 공헌 가능성이 인정된 자로, 감독 2인 또는 회장단 추천자

2급 수련 요건

- 개인상담 5사례 이상, 총 60시간 이상
- 집단상담 집단원으로 15시간 참여
- 접수면접 2회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5사례 이상
- 개인 수퍼비전 30시간 이상
- 집단 수퍼비전 30시간 이상

1급 수련 요건

- 상담 경력 4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은 개인상담)
- 접수면접 5회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10사례 이상
- 집단상담 집단원으로 30시간 이상
- 집단상담 리더/코리더로 15시간 이상
- 심리검사 수퍼비전 10사례 이상
- 집단상담 수퍼비전 2집단 이상

1급 수련 요건

- 개인 수퍼비전:
 - - 2급 취득 후: 감독에게 30시간 이상
 - - 1급 바로 지원 시: 감독 2인에게 60시간 이상 (30시간은 1급 회원 가능)
- 집단 수퍼비전:
 - - 2급 취득 후: 30시간 이상
 - - 1급 바로 지원 시: 60시간 이상

신규 추가 서류 작성 요령

(접수면접, 집단상담 참여, 심리검사 시행 및 수퍼비전)

1. 접수면접, 집단상담 참여, 심리검사 시행 (자유양식)

- 1) 상담경력증명서에 접수면접, 집단상담 참여, 심리검사 시행 시간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
- 2) 급수별로 시간이 상이함으로 미리 확인 후 제출
- 3) 발급기관 명칭과 기관 직인은 필수로 기재요함.
- 4) 경력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제출 요함.

상담경력 증명서 (예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000센터 상담사로서 00년도 00월부터
00년도 00월까지 총00시간의 면접상담, 00시간의
집단상담을 하였으므로 상담경력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직인)

2. 심리검사 개인수퍼비전

1) 기존 개인수퍼비전 양식에 심리검사 수퍼비전 내용 추가 기재

-2급: 5사례 이상 / -1급: 10사례 이상

2) 1사례 진행시, 심리검사 2개 이상이 실시 및 해석

단, 실시한 심리검사는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에 표준화 검사 1개를 실시할 수 있다. (예: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심리검사 +표준화검사)

3)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심리검사 종류

웍슬러 지능검사(K-WAIS, WAIS-IV, WISC-IV, WISC-V, K-WPPSI), MMPI(MMPI-2, MMPI-A, MMPI-RF), KPI-C, K-ABC,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CMI-IV, MCCI, BGT, SCT, HTP, KFD, Rorschach, TAT. CAT, SCL-90-R, KSCL95, DRIVER(성격&업무유형검사), BHI(성서마음검사), K-MSI(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Prepare Enrich Test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준화 검사 1개 포함 가능. 표준화 검사: 표준화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로 타당도 척도 혹은 T점수가 제시되는 검사)



한국목회상담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은 사전 검토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